

# 김포시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2908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2021. 11. .  
제출자 김포시장

## 1. 제안이유

-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의 시범운영(2021.09.10.~09.30.) 및 개관(2021.10.07.) 이후 관리·운영을 위해 보완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조례 일부를 보완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영과 방문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휴관일 신설(안 제6조제1항)
- 나. 동·하절기 기간 변경(안 제7조제1항)
- 다. 이용료(VR체험료) 조정 및 용어 정의 구체화 정비(안 제8조)
- 라. 이용료 감면 대상자 수정 및 추가(안 제9조)
- 마. 시설 변상책임 규정 추가(안 제11조제2항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신·구조문대비표 : 참고 1
- 나. 관계법령 · 현행 자치법규 : 참고 2
- 다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- 라. 그 밖의 사항
  - 1) 입법예고
    - 가) 예고기간 : 2021. 10. 13. ~ 11. 02. (20일)
    - 나) 예고결과 : 의견 1건 있음(붙임)
  - 2) 부서협의결과
    - 가) 소비자정책심의 : 원안 가결
    - 나) 부패영향평가 : 원안 동의
    - 다) 성별영향평가 : 원안 동의

## 김포시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김포시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호 중 “방문자센터”를 “생태탐방로, 매표소”로 한다.

제6조의 제목 “(개관 및 휴관)”을 “(개관)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제1항”을 “제1항제2호”로 한다.

① 생태공원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.

1. 매주 월요일
2. 그 밖에 시장이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

제7조제1항제1호 중 “10월”을 “11월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11월”을 “12월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30분”을 “1시간”으로 한다.

제9조의 제목 “(이용료의 감면 등)”을 “(입장료의 감면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이용료를 전액감면 할”을 “입장료를 면제 할”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 제8호를 제13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8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만65세 이상 노인 및 보호자를 동반한 만6세 미만인 영유아
6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7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
8. 「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
9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10.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

11. 「김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

12. 「김포시 저출산·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」에 따른 2자녀 이상 가구

② 접경지역 관광활성화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른 접경지역(강화군, 옹진군, 김포시, 파주시, 연천군, 철원군, 화천군, 양구군, 인제군, 고성군 등 10개 시·군)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.

③ 입장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당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.

제11조의 제목 “(입장 및 이용의 제한)”을 “(입장·이용의 제한 및 변상책임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제5호 중 “방문자센터”를 “검문소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내 전시물 등 시설물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

## 부 칙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·소		관광진흥과
입 안 자	실·과·소장 성명	관광진흥과장 김정애
	팀장 직위·성명	관광정책팀장 강지호
	담당자 성명·전화	지방행정주사보 박원미(☎4025)